

보도시점 2026. 4. 14.(화) 06:00
4. 14.(화) 석간

배포 2026. 4. 13.(월) 14:00

유통이력관리 대상 수입 국화 신규 지정 및 현장 맞춤형 신고 간소화 시행

- 화훼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수입·유통업계 현장 부담 완화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수입농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국화(절화/신선)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 ▲ 거래처별(음식점, 차량판매상, 노점상)로 '5일 단위 합산' 신고 허용, ▲ '수입업자'와 '소매업자'의 정의 규정 등이 있다.

세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수입량 증가로 국내 화훼 시장에서 공정 거래를 해칠 우려가 제기된 '국화(절화/신선)'를 신규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2026년 5월 1일 수입 통관되는 물량부터 본격적으로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화(절화/신선)를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업자는 거래처별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도한 내역(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량, 거래일자 등)을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pass.naqs.go.kr)」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수입농산물 등을 음식점이나 차량판매상, 노점상에 판매할 때마다 건별로 일일이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처 유형별로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산하여 1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인 '수입업자'의 정의를 기존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한자로 정의되어 있었는데,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한 자'로 수정하여 법적 의미를 정확히 하였다. '소매업자' 역시 기존에는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자로 정의되었지만,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차량판매상이나 노점상도 소매업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에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인 '수입업자'의 정의를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한 자'로 수정하여 기존에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하고, '소매업자'를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차량판매상이나 노점상도 소매업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의무 불이행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미신고: 50~500만원, 거짓신고: 100~500만원 ☞ 위반 차수별 가중 부과

농식품부 오재준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이번 고시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및 수입·유통업자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관리 실효성 확보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사후관리를 꼼꼼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주요 내용 1부.
 2.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 설명 자료 1부.
 3.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38개) 1부.
 4. 국화 사진 1부.

담당 부서 (총괄)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	책임자	과 장	오재준	(044-201-2971)
		담당자	사무관	안진미	(044-201-2276)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흥진	(054-429-4251)
		담당자	사무관	박재풍	(054-429-4161)

1. 개정 이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정의 조항 정비 및 신고 방법을 간소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화(절화/신선)’의 신규 지정 품목 확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자구수정) 수입업자의 정의 수정, 중복내용 정리 등

○ 수입업자* 및 소매업자**의 정의 수정(안 제2조제3호, 제5호)

* (現)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사무소장에 신고하는 자” →
(改) “ 「관세법」제24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 신고한 자”

** (現)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 →
(改)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 차량판매상, 노점상 포함)”

○ 유통업자의 정의 수정 및 도·소매업자 관련 중복내용 삭제(안 제2조제4호)

* “유통업자”란 수입업자로부터 → “유통업자”란

** 본문에 도·소매업자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에 중복 규정

○ 조사공무원이 열람하는 관계 장부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제8호)

* (現) “관계 장부” → (改) “영업과 관련된 장부”

□ (규제개선) 신고의무자의 신고 방법 간소화(안 제6조제5항)

* (現) 음식점, 차량판매상·노점상 건별 각각 신고 →

(改) 업태별(음식점 등)로 5일 단위로 판매량 합산하여 1건 신고

□ (관리개선) 유통이력 조사 및 위반종류 명확화(안 제8조제1항, 별지제4호 서식)

* (삭제) ‘거짓표시 및 용도의 사용’ 조사항목 삭제

** (신설) 위반확인서(서식)의 위반항목으로 ‘수거·조사 또는 열람 거부·방해·기피’ 추가

□ (신규지정) 유통이력 관리 품목 신규 수요 반영[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

* 유통이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국화(절화/신선) 신규 지정

- (근거) 「원산지표시법」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 (관리품목 지정) 국민 보건 및 원산지 둔갑 등이 우려되는 품목 중심, 관련 부서 요청에 따라 유통이력관리 심의회를 통한 지정

〈유통이력관리 지정 기준(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 ◆ 국내·외에서 위해성이 입증,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농식품
 - ◆ 수입 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품목으로 생산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농식품
 - ◆ 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품목
- ☞ 품목 지정은 3년 범위내에서 정하고 필요시 기간 연장

- (제도 운영)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 신고 의무자(수입·유통업체)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pass.naqs.go.kr)을 통해 수입에서 최종 판매 시점까지의 거래(양도) 내역을 신고
 - (신고의무자) 수입·유통업자(제외 대상: 소매업자, 소비자)
 - (신고사항)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중)량, 거래일자
 - (신고기간) 수입·유통업자는 양도 후 5일 이내 신고하고, 5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위반시 50만원)

□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위반횟수별 과태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거짓신고	100	200	400	500
미신고	50	100	300	500
장부·기록 자료 미보관	50	100	300	500
유통이력 신고 대상 미통지	50	100	300	500
조사·열람·수거 등 거부·방해·기피	100	200	400	500

- (신고방법) 유통이력관리시스템(pass.naqs.go.kr)을 통해 전산입력으로 신고하고, 전산 신고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원·사무소에 제출

붙임 3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고시 제4조제1항 관련)

연번	종 류	품목번호	지정기간
1	양파(신선·냉장) 껍질을 벗긴 것	0703.10-1010	'24.8.27.~'27.7.31.
2	양파(신선·냉장) 기타	0703.10-1090	
3	양파(냉동)	0710.80-1000	'24.1.1.~'26.12.31.
4	도라지	0706.90-4000	'24.8.27.~'27.7.31.
5	도라지(건조)	1211.90-1960	
6	김치	2005.99-1000	
7	고추(냉동)	0710.80-7000	
8	고추(건조)	0904.21-0000	
9	팥	0713.32-9000	
10	콩(대두)	1201.90-9000	
11	땅콩(꼬투리를 벗긴 것)	1202.42-0000	
12	땅콩 조제품	2008.11-9000	
13	참깨분	1208.90-9000	
14	볶은 참깨분	2008.19-3000	
15	황기	1211.90-1999	
16	당귀	1211.90-1999	
17	지황	1211.90-1999	
18	작약	1211.90-1999	
19	마늘(냉동)	0710.80-2000	
20	마늘(신선·냉장) 껍질을 벗긴 것	0703.20-1000	
21	마늘(신선·냉장) 기타	0703.20-9000	
22	표고버섯(신선·냉장)	0709.54-0000	
23	표고버섯(건조)	0712.34-0000	
24	대추(냉동)	0811.90-2000	
25	대추(건조)	0813.40-2000	
26	생강(건조)	0910.11-2000	
27	생강(건조) 파쇄 또는 분쇄	0910.12-2000	
28	생강(신선·냉장)	0910.11-1000	
29	녹두(건조)	0713.31-9000	'24.1.1.~'26.12.31.
30	고사리(냉동)	0710.80-5000	
31	고사리(건조)	0712.90-2010	
32	당근	0706.10-1000	
33	대파(냉동)	0710.80-9010	
34	대파(건조)	0712.90-2030	
35	대파(신선·냉장)	0703.90-2000	'24.8.27.~'27.7.31.
36	산양삼	1211.20-1110	
37	천연꿀	0409.00-0000	
38	국화(절화/신선)	0603.14-0000	'26.5.1.~'28.12.31.

